

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4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 2.
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15. 3. 24.)으로 “가축”의 정의에 “메추리”가 추가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“가축”의 범위에 “메추리”를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호)

3. 근거법규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(사육동물)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: 2017. 3. 20. ~ 2017. 4. 10.(의견없음)

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599호

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가축”이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”을 “법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가축”이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<u>사육동물로 소·돼지·말·닭·젓소·오리·양·사슴 및 개를 말한다.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) ① 「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가축”이란 「<u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따른다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) ① <u>법 제8조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근거법규

□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법	시행령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가축"이란 소·돼지·말·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사육동물)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"이란 젓소, 오리, 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사슴,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. <개정 2015.3.24.>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346)

1. 의안명: 울산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7. 5. 2. (화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7. 5. 8.(월)
- 위원회심사 : 2017. 5. 15.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유형목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(‘15. 3. 24.)으로 “가축”의 정의에 “메추리”가 추가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“가축”의 범위에 “메추리”를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(안 제2조제1호)

4. 근거법령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호(사육동물)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상위법인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15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가축 종류를 추가하는 등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